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66호
2019. 10. 11.(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고시 제2019-118호)1

공 고(3)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사항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 제2019-852호)2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9-860호)3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9-861호)4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덕암동 41-20	덕암로221번길 40	2019. 10. 11.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비고
한밭대로1033번길 10-9	2019. 10. 11.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중리서로41번길 21	2019. 10. 11.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중리서로41번길 23	2019. 10. 11.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사항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기간 : 2019년 10월 11일 ~ 2019년 10월 25일

□ 공고사항 :

- 처분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사항 취소**
- 처분사유: 6개월 이상 폐문하여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허가의 취소 등)

□ 대상업체 : 주식회사 대덕식품

□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042-608-6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212-1번지 상 건축물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용호동 212-1	23.3㎡	1.5m	16.32m	송치상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230-1번지 상 건축물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용호동 230-1	48㎡	1.5m	41.5m	이상록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